

대전지방법원 2020. 5. 13 선고 2019가단11932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,진현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

담당변호사 김영호,강미혜

변론 종결 2020. 3. 18

판결 선고 2020. 5. 13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8. 1. 12. 접수 제2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'C' 이라 한다)의 대표이사인데, 2016 . 12.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, 2017 . 11. 27.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.

[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사항]

1. 피고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이전등기해주기
2. 혼인신고하고 정식 부부로 인정하기

(이하 중략)

[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사항]

1. 짐싸서 집나가지 않기
2. 혹시 싸워도 집나가지 않기

(이하 중략)

다. C은 2013 . 11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에 관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2017 . 12. 15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5,600,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8 . 1. 12.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5, 750,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5, 590, 000원을 C 에게 지급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로도 다툼이 있어 결국 결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, 14호증의 각 기재, 피고 본인신문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,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 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'부동산실 권리 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무효이다. 따라서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으므로 매수인 겸 명의 신탁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(피보전 권리) 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14339판결 등 참조).

2) 원고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, 갑 제 5, 11, 12,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에 따라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박정기

별지